

평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 청취(안) -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평 창 군

평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09.
제 출 자 : 평창군수

1. 제안사유

-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당초 대량 재배되는 주요생산지 또는 한약재의 유통거점에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장 창고 등을 건립하여 소비자에게 상시적으로 보관 공급할 수 있는 유통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 과정에 우수한약재의 품질검사·전처리·가공·판매 종합적인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국산한약재의 품질관리 확산, 한방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평창을 비롯한 전국 5개 지자체(평창,제천,안동,진안,화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따라서 당초 우리군은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에 시설 가능 하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통시설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용도지역(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 조에 의하여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입안내용
 - 용도지역결정(변경), 군계획시설결정(유통업무설비, 도로)
 - 용도지역 변경 : 농림지역 23,248㎡, 관리지역 2,652㎡ → 계획관리지역 25,900㎡
 - 군계획시설 결정 : 유통업무설비시설 25,900㎡
 - 도로결정(진입도로) : 소로2류 연장 464m(면적 3,852㎡)

2. 계획의 개요

1) 사업개요

가.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41-2번지 일원

나. 면 적 : 29,752㎡ (유통업무설비 : 25,900㎡, 진입도로 : 3,852㎡)

다. 사업 내용 : - 한약유통지원시설 4,539.31㎡, 주차장 1,365㎡, 도로 1,078㎡
- 보행자도로 994㎡, 광장 5,501㎡, 조경녹지 7,123㎡, 완충녹지 5,299.69㎡

라. 사업비 : 115억원

마. 사업기간 : 2008년 ~ 2009년

바. 사업시행자 : 평창군수(보건의료원)

3. 참고사항

○ 관련법 검토 : 2008. 06.(실과소별 개별법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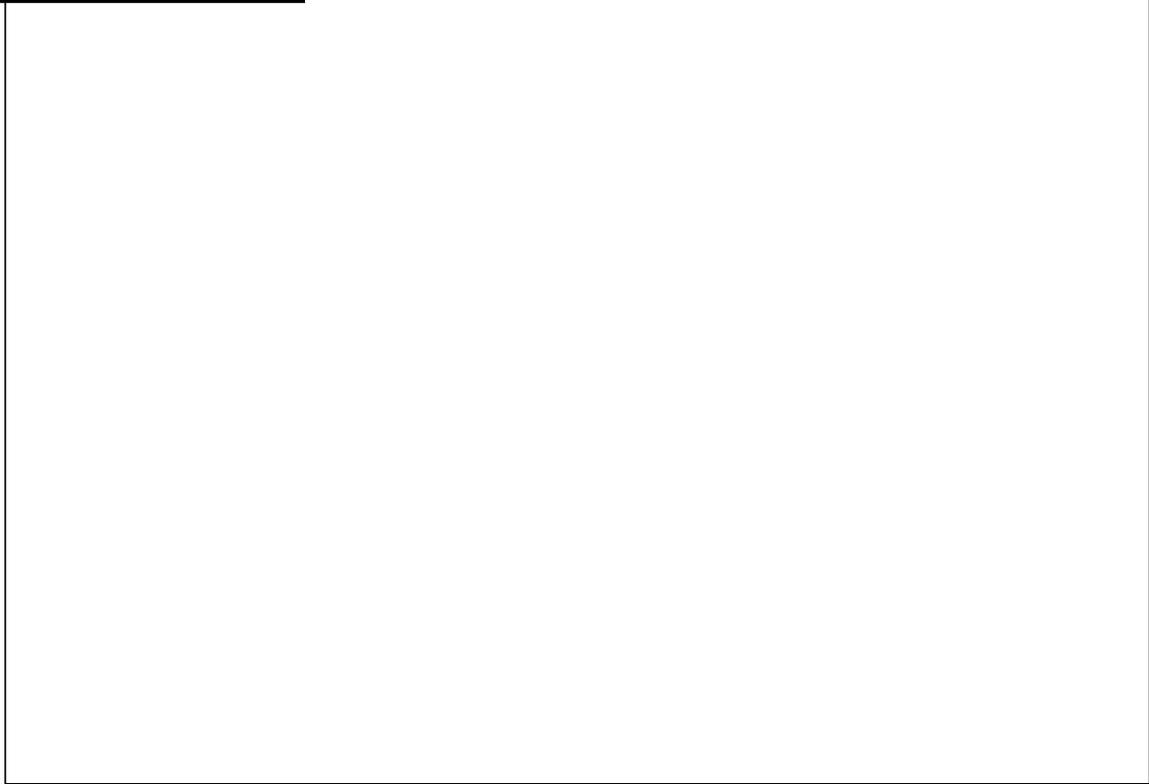
○ 주민공람 : 2008. 8. 20 ~ 2008. 9. 8

- 의견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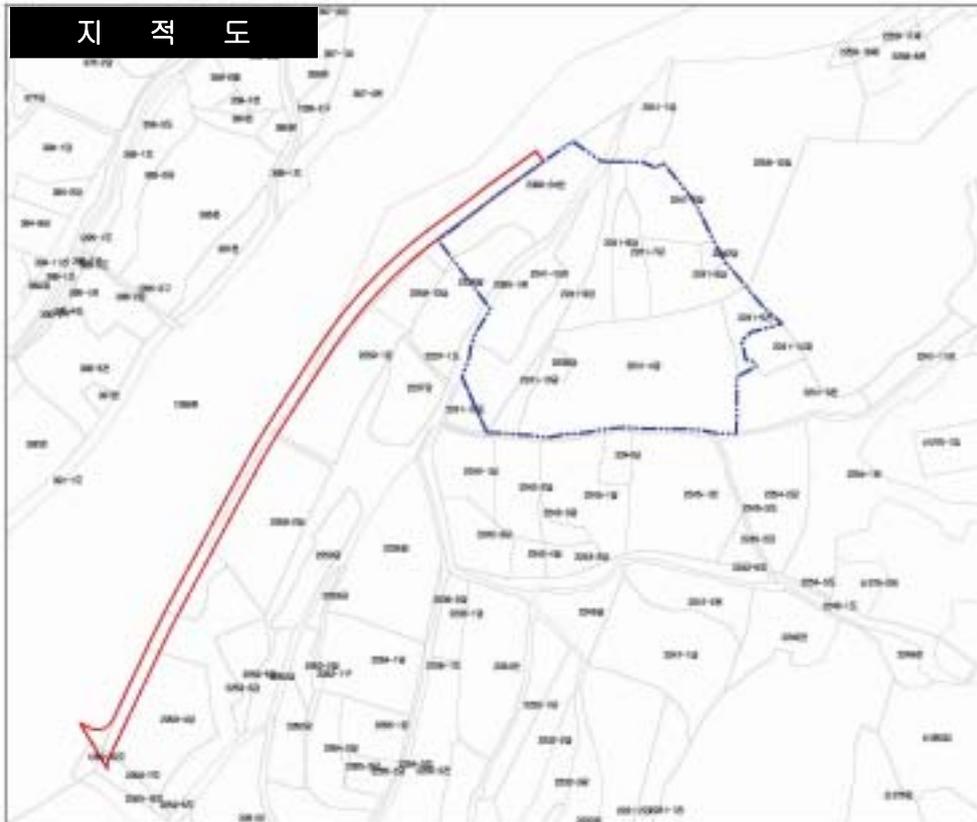
위 치 도



토지이용계획도



지 적 도



지 적 도

범 례

- 구 역 계
- 경 경 도로
- 지 적 선

SCALE

1:1,200



0 100m 200m

3. 토지조서

유통업무설비 시설 토지조서							
일련번호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용도지역	비고
1	2238	답	2,853	1,099	평창군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2	2239	답	344	344	평창군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3	2390-1	천	145,196	527	국(건설부)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4	2390-24	천	3,286	2,652	평창군	관리지역	
5	2240	답	198	198	평창군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6	2241-2	답	1,653	1,653	평창군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7	2241-4	답	8,164	8,164	평창군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8	2241-5	답	827	827	평창군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9	2241-6	답	1,937	1,937	평창군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10	2241-7	답	1,455	1,455	평창군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11	2241-8	답	1,481	1,481	평창군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12	2241-9	답	3,481	3,073	평창군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13	2241-10	전	1,917	1,917	평창군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14	2241-13	답	573	573	평창군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합	계		173,365	25,900			

<지목별 총괄표>

구 분	계	전	답	하천
면적(㎡)	25,900	1,917	20,804	3,179
필지수	14	1	11	2
구성비(%)	100	7.4	80.3	12.3

< 소유자별 총괄표 >

구 분	계	국유지	공유지	비고
면적(㎡)	25,900	527	25,373	
필지수	14	1	13	
구성비(%)	100	2.0	98.0	

2. 진입도로 편입토지조서

일련번호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용도지역	비고
1	1289	천	-	1,237	국(건설부)	관리지역	관리지역
2	1289-45	도	-	23	평창군	관리지역	관리지역
3	2390-1	천	145,196	1,497	국(건설부)	관리지역	관리지역
4	2259-1	답	1214	68	박만철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5	2259-2	전	2,169	308	황승구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6	2259-3	전	3,344	190	정상교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7	2259-4	답	3,647	493	최상돈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8	2259-7	도	509	36	평창군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합 계				3,852			

< 지목별 총괄표 >

구 분	계	전	답	하천	도로
면 적(㎡)	3,852	498	561	2,734	59
필지수	8	2	2	2	2
구성비(%)	100.0	12.9	14.6	71.0	1.5

< 소유자별 총괄표 >

구 분	계	국 유 지	공 유 지	사유지	비 고
면적(㎡)	3,852	2,734	59	1,059	-
필지수	8	1	1	4	-
구성비(%)	100.0	71.0	1.5	27.5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5,900		25,900	100.0	-
관리지역	2,652	감)2,652	-	-	-
농림지역	23,248	감)23,248	-	-	-
계획관리지역	-	증)25,900	25,900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결 정 사 유
		기 정	변 경		
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38번지 일원	관리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5,900	군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결정

나. 군계획시설 결정

1) 유통 및 공급시설 결정(변경) 조서

유통업무설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유통 업무설비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38번지 일원	-	증) 25,900	25,900	-	

유통업무설비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①	유통 업무설비	-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신설 - 면적 :25,900㎡	· 평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조성에 따른 군 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결정을 통해 사업 시행하고자함

□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시설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유통 업무설비	합 계	-	(증)25,900	25,900		
		한약 유통지원시설	-	(증)4,539.31	4,539.31		
		주차장	-	(증)1,365	1,365		
		도 로	-	(증)1,078	1,078		
		보행자도로	-	(증)994	994		
		광 장	-	(증)5,501	5,501		
		조경녹지	-	(증)7,123	7,123		
		완충녹지	-	(증)5,299.69	5,299.69		

2) 도 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21	8	국지 도로	464	2259-7 도	2390-1 천	일반도로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신설	-	소로 2-21호선	노선신설 B=8, L=464m	· 평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구성에 따른 군계획 시설인 유통업무설비결정을 위하여 진입도로 신설로 인한 군계획시설 결정

4.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협의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농정과	○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함[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 농지분야 협의]사전 재해 영향성검토 대상	○농지법에 따라 농지분야 협의를 하겠음	반영
주민생활 지원과	○ 저촉사항 없으며 대상부지내 무연분묘가 위치할 경우 무연분묘허가를 득하고 유연분묘가 위치할 경우 연고자와 협의후 처리 하기바람.	○해당사항없음	미반영
환경과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사업으로 문화재지표조사를 이행하고,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함.	○본 시설은 29,752㎡로 지표조사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됨	미반영
	○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임	○환경정책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는 현재 추진 진행중에 있음	반영
	○ 동법 제22조에 의거 공사 시행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임 ○동법 제8조에 의거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임 (전처리가공시설의 소음·진동 기계·기구가 있을시)	○소음진동규제법에 관련된 사항은 시공사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음	반영
	○ 지하수 개발·이용시 지하수법 7조 및 8조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임	○지하수법에 관련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는 시공사가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음	반영
	○동법 제43조에 의거 공사 시행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사전신고 대상임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시공사가 실시계획승인시 신청토록 하겠음	반영
	○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석유류 저장시설이 2만리터 이상일 경우 사전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함	○본 시설은 LPG를 사용함으로 토양환경보존법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미반영

협의부서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환경과	○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거 사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임 ○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일 경우신고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 하여야 함	○시공자 선정후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 승인 신청시 신청토록 하겠음	반영
	○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이 5t이상 발생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함	○시공자 선정후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 승인 신청시 신청토록 하겠음	반영
	○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이 5t이상 발생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시공자 선정후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 승인 신청시 신청토록 하겠음	반영
민원봉사과	○ 본 시설,삼성레미콘,재활용분류작업장을 이용하는 대형 차량통행이 급증하게 되면 인근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음. ○ 교통안전대책 요망 - 교통안전신호등(경보등)설치 ▪ 국도59호선에서의 진입로에 1개 설치 ▪ 송정교에서의 진출입로 입구에 1개 설치요	○ 교통성검토 결과를 토대로 교통처리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반영
민원봉사과	○ 송정교에서 본시설로 진입하는 도로입구가 심하게 좁아있으므로 연결부분을 넓게 확보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토지매입시 차량통행 원활위해 토지기매입 확보 하였음	반영
재무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 또한,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외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음. 단,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당초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받아 군으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며 건축물 소유권이 평창군으로 이전되므로 동법제13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준공후 민간위탁운영 하게 되므로 별도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할것임	기 반영 반영

협의부서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상하수도 사업소	○ 본 지역은 급수구역외 지역으로 진부 상수도 이용시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과 같이 지하수 이용시 급수인구가 100인 이상 5천인 이내일 경우 수도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인가 대상이며, 수도법 제11조의 2에 의한 절수 설비 설치대상임	○본 시설의 상수는 지하관정 개발하여 공급할 계획임 - 단, 급수인구가 100인 이상시는 전용상수도 인가를 받도록 하겠으며, 정수설비를 설치토록 하겠음.	미반영
	○ 본 지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공공 하수도 처리구역외 지역이나, 진부하수 처리장에 연계처리를 원할시는 관로등 연계처리를 위한 시설비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함.또한 하수도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건축연면적 6만㎡ 이상시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본 시설의 하수처리는 단지내 정화조를 설치하여 자체 정화 후 방류토록 할 계획 임. ○중수도 시설은 건축연면적이 4,667㎡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미반영
재난 관리과	○ 사전 재해 영향성검토 대상임	○사전 재해영향성검토를 받을 것임	반영

□ 주민의견 청취(공람공고) 결과

- 공고방법 : ° 신문공고 - 강원일보 (2008.8.20)
 - 도민일보 (2008.8.20)
 - 한겨레 신문(2008.8.20)
- ° 평창군청 홈페이지
- 공고기간 : 신문 게재일로부터 20일
- 공람장소 :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진부면사무소
- 주민의견 : 없음.

■ 의회의견 청취 근거법률

1.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2.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

- ⑦ **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1.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
 -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철도중 도시철도
 -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 바. 학교중 대학
- 사. 운동장
- 아. 삭제 <2005.9.8>
-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차. 화장장
- 카. 공동묘지
- 타. 납골시설
-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 하. 폐기물처리시설
- 거. 수질오염방지시설